

상담 : 鄭 基 善 (서울대병원부설 병원연구소 자문위원)

고정자산 耐用年數 감가상각은 ?

문 최근 固定資産의 耐用年數 중 일부가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減價償却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S 病院>

답 (1) 耐用年數 단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85년 11월호에 이미 게재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그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減價償却때 흔히 저지르는 착오는 신규 取得資産과 処分資産에 대한 계산에 있어 月數를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月割計算은 신규취득때에는 취득한 月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5년 3월에 의료기기를 취득하였다면 감가상각하는 月數는 10개월(3월부터 12월)이 됩니다. 반대로 처분때에는 처분월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감가상각하는 월수는 9개월이 됩니다. 처분때에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異論이 제기되나 會計理論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장비를 처분년도에도 9개월 이상 사용하여 醫療收益을 실현시켰다면 수익과 비용의 對應原則에 의거 당연히 9개월간의 감가상각비는 의료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분되는 資産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큰 경우에 이를 감가상각 계산하였다면 의료비용 중 관리비에 계산되나, 계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금액이 特別損益의

고정자산처분손익과목에 계상되어 경영분석시 그 금액만큼 의료이익률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2) 두번째로 주의할 것은 年度 중에 자본적 지출이 있어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언제부터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의료기기를 보수하여 7월부터 2백만원 만큼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는 6개월분만큼 月割계산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감가상각은 증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 1천2백만원에 대하여 年初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즉, 증가분도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세번째의 문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稅法에는 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가능여부와 단위당 취득금액 10만원의 두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이를 판단하는데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예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면 보다 쉽게 구분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 → 資本的支出
 (내용연수 1년 이상)
- ② (취득가액 10만원 이상) → 收益的支出
 (내용연수 1년 이하)
- ③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 收益的支出
 (내용연수 1년 이하)
- ④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 資本的 또는
 (내용연수 1년 이상) → 收益的支出

위의 ①~③의 예는 명확히 구별되나 ④ 항의 경우는 사실판단의 문제가 있으므로 병원에 따라 内規를 정하여 단위당 취득가액 일정 금액 이상(예, 5만원)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5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자산중 1년 이상 사용할수 있는 품목은 별도로 簿外資産 목록을 만들어 매년 실시하는 資産実査時에 이들 품목의 분실 또는 훼손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4) 고정자산 중 병원에서 그 구분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건물과 건물부속설비, 의료장비, 정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建物価額 중 50년의 내용연수를 가진 것은 골조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内裝공사분이며 부속설비인 승강기,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등은 대부분 10~18년의 짧은 耐用年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여야만 합니다. 기초자료는 都給工事때에 견적서나 기타부속서류를 보면 공사총금액 몇십억원을 성질별로 어떻게 분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의 耐用年數 분류는 税法에는 간단하게 되

어 있으므로 病院會計準則制定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부록에 제시된 美国病院協會의 분류표와 税法上的 분류를 비교하여 나타낸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병원들이 정원에 해당되는 조정공사액을 감가상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税法에는 3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정공사 금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5) 많은 병원들은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年未에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관리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월차결산을 한다면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年初에, 또는 年未에 다음 연도분을 概算하여 이를 연도 중에 적용하고 연말에 일부 틀린 부분을 수정하여 연간분을 계산·확정하여야 합니다.

연간분을 概算하는 방법은 전년도 말 상각잔액을 기초로 감가상각을 하고 금년 중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자산은 그 금액과 취득시기를 예측하여 대략적으로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취득금액이나 취득시기가 확정되면 이들 항목만을 수정하면 되므로 연말에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